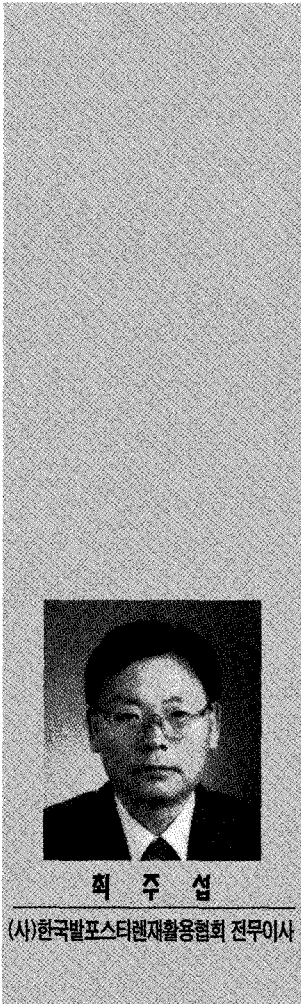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공적인 운용



적 주 섭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2002년 2월 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폐기물 관리정책에 있어 양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는 폐기물 처리방식의 변화이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반하여 매립 및 소각 처리시설의 상대적 부족, 소비자를 통한 원천적인 발생억제 권고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 시책에 중점을 두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폐기물 처리책임의 변화이다.

폐기물 배출자에 의해 집박에 내놓아지면 지자체가 수거운반하여 매립 또는 소각처리 하는 폐기물처리의 공공책임과 쓰레기종량제 등 소비자 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자 책임의 강화 즉 예치금 납부라는 소극적 책임에서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 이행케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의 1.3배의 부과금을

## “재활용 기술 증대를 통한 생산자 분담 수수료 최소화”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생산자 책임의 범위에 있어 독일은 분리수거부터 재활용까지를, 일본은 지자체가 분리수거한 것에 대한 재활용 책임만을 주고 있다.

이미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방식에 가까워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의 분리수거, 생산자의 재활용 등의 상호책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01년부터 그간 예치금 대상이었던 폐가전품, 폐유리병, 금속캔, 폐타이어, 폐형광 등 품목을 업계와 자율협정 형식으로 적용하여 왔다. 이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페트병, 폐컴퓨터, 종이팩 등 예치금 대상 전품목과 예치금 제외 품목 중 재활용체제가 성숙되어가는 스티로폼 포장재 등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되어갈 예정이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큰 획을 이룰 수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품목별 재활용 목표량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인가? 시민들

의 분리배출 협조와 지자체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인력과 기초적 선별장치는 확보되었는가?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시설 능력을 단기간에 증설, 보강할 만큼 경제적 유인책은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인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는 가까운 미래에 확보될 수 있는가? 등이 사전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는 품목별 재활용공제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재활용기술의 증대를 통한 생산자가 분담해야 할 수수료의 최소화, 생산자의 재활용분담금의 납부를 제고, 재활용 실적 보고의 정확성 확보,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등 조직화시 기존의 재활용사업자 및 단체의 최대한 포용, 재활용 의무율의 미이행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재활용사업자 육성 기금으로의 중점 활용, 재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플라스틱류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전후방 관련사업자까지 참여하는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하여 단위생산 당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제품의 생산, 회수 재활용 비용이 저렴한 포장재의 선택 이용, 제품 사용 후 재활용율의 증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매립 또는 소각처리 대상이 최소화되는 자원재순환사회의 구축을 기대해 본다. ☐